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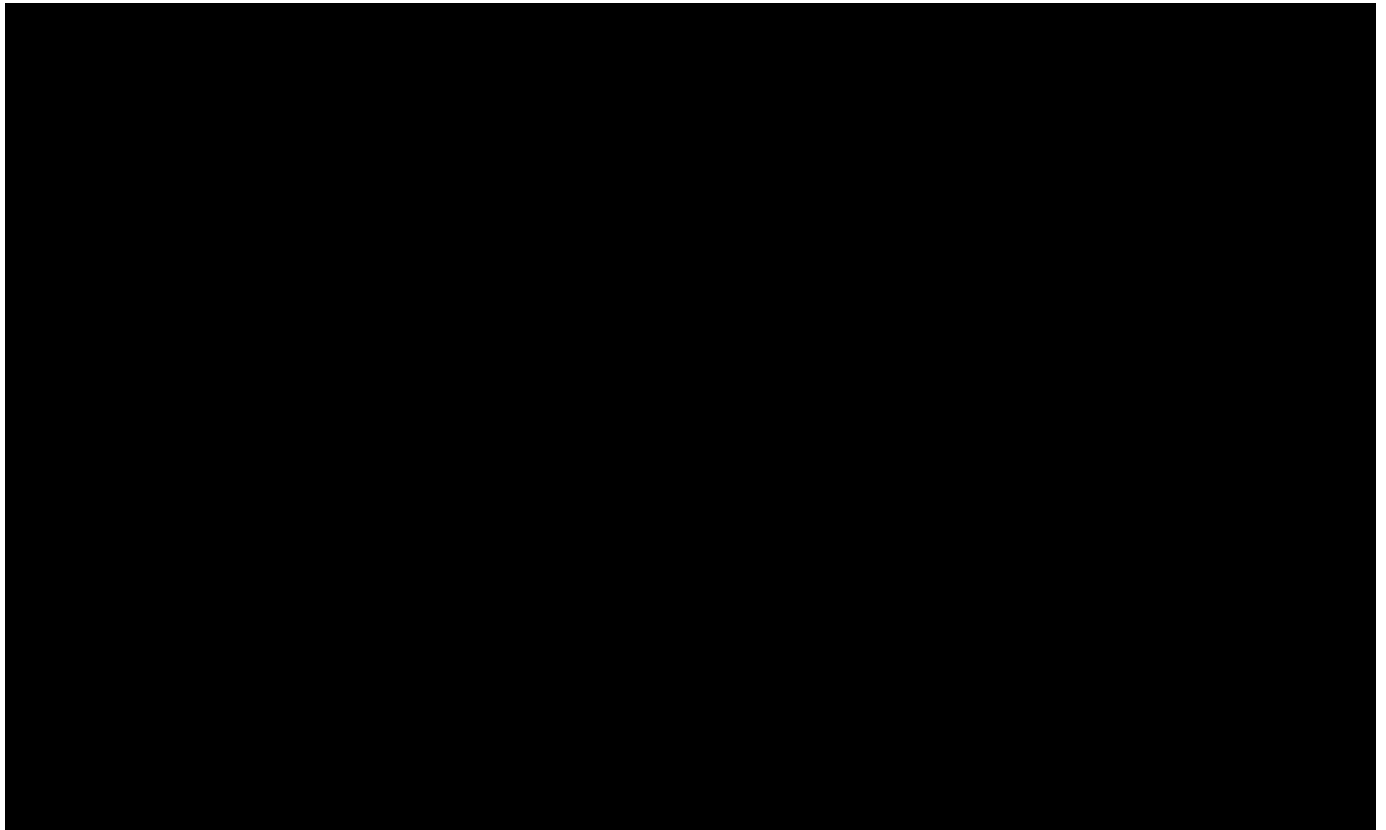
## Korean - 한국어

이주 노동자 및 비자 소유자를 포함한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인들은 직장에서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비록 근로자들이 비자를 갖고 일을 할지라도, 호주에서의 모든 고용주는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직장에서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근로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 시작하기

호주에서의 근로 활동에 관해 알아보세요:

- [급여](#)
- [휴가 및 휴직](#)
- [고용 종료](#)
- [도움 구하기](#)
- [연락하기](#).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DOCX 314.4KB\)](#) ([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38/korean-starting-a-new-job-guide.docx.aspx](http://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38/korean-starting-a-new-job-guide.docx.aspx)) ([PDF 753.3KB](#)) ([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38/korean-starting-a-new-job-guide.pdf.aspx](http://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38/korean-starting-a-new-job-guide.pdf.aspx)) ([Guide to starting a new job](#)) 를 확인하세요.

### 급여

모든 고용인들이 받는 최저 시급은 직업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21세 이상의 고용인은 최소 시간당 \$20.33,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당 \$25.41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근로 급여 페이지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payment-for-work\)](http://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payment-for-work) 를 방문하세요.

고용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일의 일환으로서 회의 참석 또는 업무 개시 및 마감에 해야 할 경우에는, 일하는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적

절한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용인은 반드시 돈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며, 물건이나 음식, 옷 혹은 숙소와 같은 서비스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휴가 및 휴직

고용인들은 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를 '휴가(leave)' 로 칭합니다. 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휴일을 위한 유급 휴가
- 병가 혹은 간병을 위한 유급 휴가
- 출산했을 때 받는 휴가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휴가 및 휴직 페이지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holidays-and-taking-time-off-work\)](http://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holidays-and-taking-time-off-work) 로 이동하세요.

## 고용 종료

고용인은 사직하거나 해직(해고)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지(notice)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 및 퇴직 계산기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https://calculate.fairwork.gov.au/endingemployment\)](https://calculate.fairwork.gov.au/endingemployment) )를 사용하여 통지와 퇴직(redundancy) 관련 권리를 산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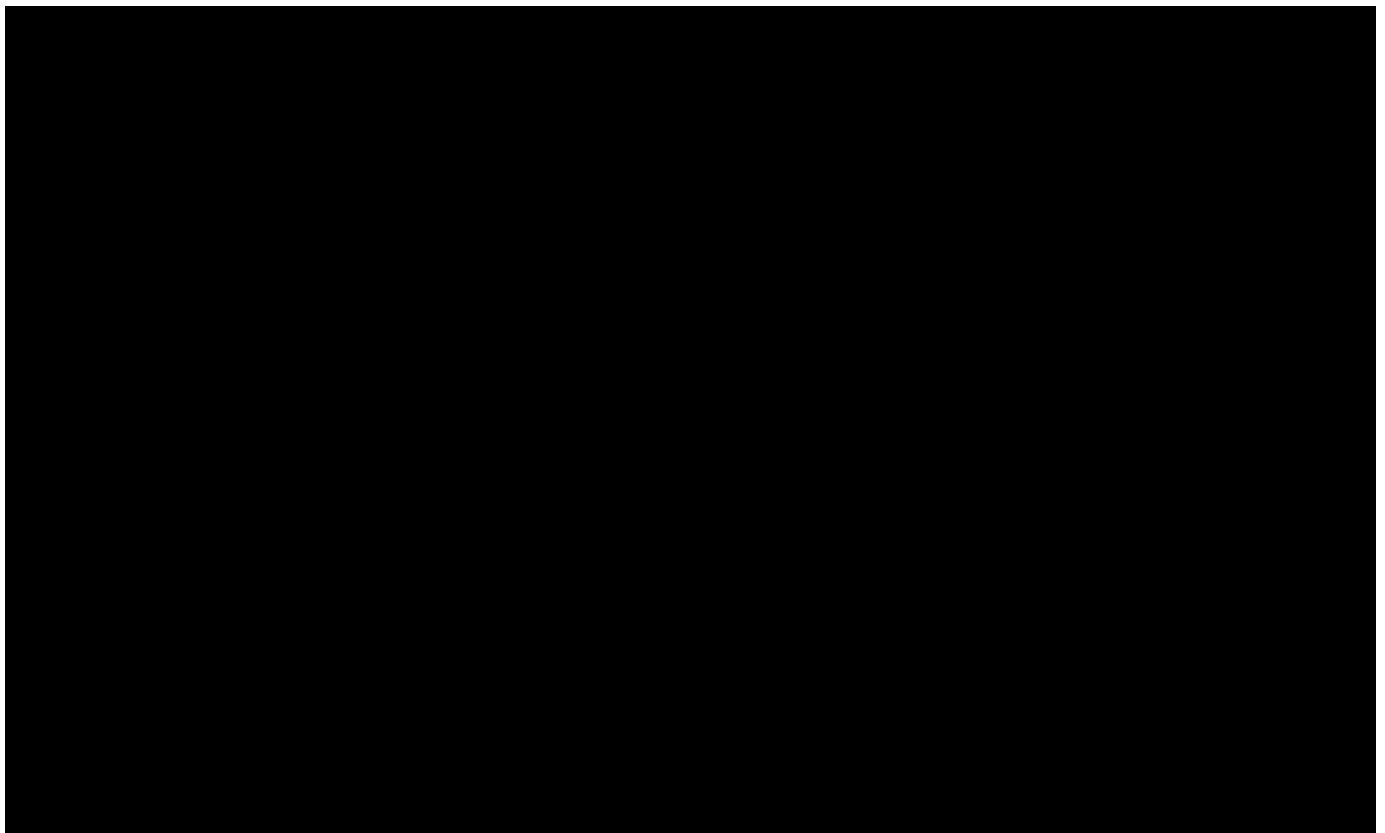
## 도움이 필요하세요?

귀하의 급여 혹은 근무 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언어로 전달하세요.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보다 많은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짧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Fair Work Ombudsman이 어떻게 귀하의 직장 분쟁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직장 문제 해결 페이지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issues-in-the-workplace/resolving-workplace-disputes\)](http://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issues-in-the-workplace/resolving-workplace-disputes) 를 참고하세요.

누군가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당신이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저희에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issues-in-the-workplace/default](http://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issues-in-the-workplace/default)) .

고용인은 급여 및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묻기 위해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하는 것을 이유로 곤경에 처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의 모든 근로자들은 동일한 노동보호를 받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짧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연락하기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귀하의 언어로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131 450으로 통번역 서비스(TIS)에 연락하세요. 교환원에게 귀하가 사용할 언어를 전달하고, 131 394로 전화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61 3 9268 8332번으로 호주 외 국가에서 TIS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누군가가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걱정되나요? 귀하는 이에 관해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서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issues-in-the-workplace/default\)](http://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issues-in-the-workplace/default) 를 지금 작성해 주세요.

Page reference No: 2816

### Contact us

Fair Work Online: [www.fairwork.gov.au](http://www.fairwork.gov.au)

Fair Work Infoline: 13 13 94

Need language help?

Contact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on 13 14 50

Hearing & speech assistance

Call through the National Relay Service (NRS):

For TTY: 13 36 77. Ask for the Fair Work Infoline 13 13 94

Speak & Listen: 1300 555 727. Ask for the Fair Work Infoline 13 13 94

The Fair Work Ombudsman is committed to providing advice that you can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website is general in nature. If you are unsure about how it applies to your situation you can call our Infoline on 13 13 94 or speak with a union, industry association or workplace relations professional. Visitors are warned that this site may inadvertently contain names or pictures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have recently died.